

NO.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4	-	-	-	주 의(2명)

【제 목】 대학 교수 채용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

1. 지적 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문화유산융합대학원의 2014년도 2학기 수강을 위해 '유물 수리복원 분야' 전임 교원 채용을 추진하면서, 채용 심사 방법으로 서류심사, 전공적부심사, 연구실적심사, 공개강의 심사 및 면접심사의 과정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는 내용의 채용계획을 수립(교무과-1255호, 2014.04.04) 하였음

동 계획에 따르면 연구실적 심사 평가를 함에 있어 '기타 연구실적물의 양적 심사' 평가 항목은 A등급은 5편 이상(5점), B등급은 3편 이상 5편 미만(3점), C등급은 2편 이하(1점)로 등급화하여 등급별 평가 점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원자가 제출한 실적을 동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함에도 심사위원이 재량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과 다른 평가가 이루어짐

이에 따라 채용 계획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실적 심사를 재채점 한 결과 연구실적 심사에서는 당초 2순위 자가 3순위 자료, 3순위 자가 2순위자로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상기 채용 대상자 3명 모두 연구실적심사를 통과하여 공개강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채점 내용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결과 종합평가(전공적부심사+연구실적심사+공개강의심사+면접심사) 순위 변동은 없었음

2.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향후 대학 교수 채용 관련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NO.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4	개 선	-	-	

【제 목】 교원 연구년제 운영에 관한 사항

1. 관련 근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연구년제 운영 규정」 제11조(의무)에 의하면 교원 연구년제를 부여받은 연구교원은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 1년 이내에 연구활동 보고서를 소속 학과장과 교학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구년 중에 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교원들의 연구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학문영역의 개척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원 연구년제를 운영하며,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000 교수 등 총 4명에게 각각 6개월의 연구년을 부여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000000학과 교수 000과 000000학과 교수 000 등 2명은 연구활동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연구년제 운영 규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년 중 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문으로 연구활동보고서의 제출을 독려하여 제출기한을 2~3개월 넘긴 시점에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받았음.

※ 연구년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에 대한 타대학 사례 조사

- 조사대상 : 00대학교 등 11개대학
- 조사결과 : **대학교 등 2개교에서 연구비를 반납받은 사례가 있으나, 해당 기간의 보수를 반납하게 하는 규정 및 사례는 없음

3.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은 교원 연구년제 운영과 관련하여 타 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NO.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4	개 선	-	-	-

【제 목】 신입생 입학 특별전형 방법에 관한 사항

1. 관련 근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령」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에 따르면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있으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제40조(입학전형)에 따르면 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모집시에 공고토록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6개의 학과에서 전형유형별 지원자격을 7개 유형(추천자, 한문우수자, 외국어우수자, 기술자·기능자, 경시대회·공모전, 무형문화재이수자, 사회적배려대상자(정원외))으로 구분하여 특별전형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

특별전형의 합격 여부는 우선 각 전형유형별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학생기록부 200점(50%)과 심층면접 200점(50%)을 일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음

2013~2015학년도 특별전형 중 추천자 및 경시대회·공모전 전형유형의 채점을 파악한 결과, 6개 학과 중 일부 학과의 합격자와 불합격자간의 심층면접 점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학생기록부 배점(50%)의 반영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특별전형 심층면접의 제출서류인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의 양식에는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하게되므로 자기소개서 본문에 다닌 고등학교 명칭이나 성명을 기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심층면접시 면접위원에게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와 함께 지원자의 출신고교가 명시되어 있는 입학원서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당초의 공정성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신입생 입학 특별전형 선발 시 면접 비중 축소, 면접 방법 개선 등 신입생 선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NO.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4	개선	-	-	-

【제 목】 전통문화상품개발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 관련 근거

「전통문화상품개발실 운영 규정」 제2조(사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상품개발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전통문화상품 개발(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판매, 2. 조달청 조달문화상품 제작 판매,
3. 전통문화상품과 관련된 교육 지도, 4. 문화상품 창업 아카데미 운영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에 따르면 종업원등이 특허 등 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나, 사용자등이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정해진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따라 발명자가 사용자등에게 특허권을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사용자등은 이에 대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토록 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가. 전통문화상품개발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상품개발실 운영규정」(2013.3.14/예규 제24호)에 따라 전통문화상품 개발 판매, 교육지도, 문화상품 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교 부속기관으로 전통문화상품개발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동 전통문화상품개발실의 2013년 이후 사업 활동 내역을 분석·확인한 결과, 전통문화상품 개발(13년 : 소반모양 다식접시 등 15품목 47종/14년 : 백제문화 적용 문화상품 등 26품목 67종), 산학 협력활동 실시(2개 기관) 등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학부생들에게 정규교육과정으로 배우기 어려운 상품 개발 관련 창작 능력과 연구 개발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며, 관련 규정상 전통문화상품개발실 사업 범위에도 학부생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이 명확히 담겨 있지 않은 실정임

나. 전통문화상품개발실 디자인 특허 등록에 관한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상품개발실에서 개발한 디자인의 특허 출원을 대비하여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권등의 승계 여부와 이에 따른 보상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자와의 협의를 통한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향후 특허권 등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상품 디자인 개발자와의 공식적인 협의를 통한 승계 계약 등의 절차 없이 전통문화상품개발실에서 2013년 개발한 소반모양 다식 접시 등 디자인 우수 품목 10종에 대하여 특허법인(★★★)과 계약하였고, 이 중 6건에 대하여 2014. 9. 18. 디자인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3. 조치할 사항

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전통문화상품개발실의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학부생들이 전통상품개발 창작능력 및 연구 개발 능력이 향상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디자인 특허 등록과 관련하여 개발자와의 분쟁의 소지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NO.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4	기관주의	-	-	-

【제 목】 휴강 및 보강에 관한 사항

1. 관련 근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46조(휴강 및 보강)에 따르면 교원이 공무 또는 개인사정에 의한 휴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학과장 및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강계획서에 따라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담당 교원이 정규수업일에 출장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나, 2012년부터 2014년 12월 현재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대학원 포함)의 전임교원의 출장, 연가 등 현황을 토대로 휴강 및 보강 내역을 파악한 결과, 총 16건의 출장에 대하여 보강수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① 수업일 출장을 실시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보강수업을 하였다고 하나, 보강계획 및 보강결과를 미제출 : 11건
- ② 수업일 출장가기 이전 수업을 실시하거나 출장을 다녀온 후에 수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출장시간과 수업시간이 일부 중복 : 3건
- ③ 수업일 출장을 실시하였으나 감사일까지 보강수업 미이행 : 2건

또한, 전임교원의 연가는 “e-사람” 결재시스템을 사용하고, 출장은 “학사포털” 결재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출장, 연가 결재시스템이 이원화 되어 있고, 학사포털의 경우 교원의 출장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상 출장으로 인한 보강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3.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교원의 출장, 연가 등으로 인한 휴강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NO.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4	통 보	-	-	-

【제 목】 홈페이지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현 황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00년부터 홈페이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구성현황은 학교소개 및 입학안내, 학교 소식 제공 등을 위한 대표 홈페이지(www.nuch.ac.kr)와 입시홈페이지(admission.nuch.ac.kr), 학과·교수소개 및 졸업 후 진로 안내 등을 위한 6개 학과 홈페이지, 대학원생을 위한 대학원 홈페이지 등 9개의 일반 홈페이지와 더불어, 학술정보관 홈페이지(library.nuch.ac.kr)와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tctc.nuch.ac.kr) 등 2개의 전문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자체종합감사 기간 동안 상기 11개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 “교육신청” 코너 등 11개 코너가 미사용하고 있으며, 대표홈페이지 정보공개코너의 “(사전)행정정보공표 목록” 및 6개 학과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코너 등 9개 코너는 6개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는 등 홈페이지 운용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3.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업데이터 등 홈페이지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NO.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4	개 선	-	-	-

【제 목】 직원 관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 현 황

□ 관사 현황

구분	계	내부관사					외부관사(아파트)			
		총장 공관	A동	B동 1층	B동 복층	원룸	홍선	무지 개	대동	동남
세대수	57	1	9	8	8	18	3	8	1	1

□ 교직원 현황

구분	교 원(조교포함)	직원	계	비 고
인원	41	53	94	* 65명 관사 사용

* 교직원 중 부여에 연고가 있는 직원(발령 전 부여 거주자)은 10명임

2. 지적 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교직원 복지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57개의 관사에 65명의 교직원이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관사관리 규정」에 따라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관사관리 규정」 제4조(사용허가)에 따르면 입주희망자가 다수일 때에는 입주희망자의 직급, 재직년수 등을 참작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어 향후 입주희망자가 많을 경우 입주희망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상기 규정에는 관사 거주기간이 2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임교원의 경우 2000년 개교 이후 기간 연장에 대한 절차 없이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등 관사 수급 및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임

3.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관사 관리 규정」의 입주 희망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관사 거주 기간을 보완 하는 등 관사 관리·운영 방안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NO.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4	통 보	-	-	-
【제 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p>1. 관련 근거</p> <p>「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p> <p>「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2. 지적 내용</p> <p>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2014. 12월 현재까지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정기점검 또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p> <p>3. 조치할 사항</p> <p>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시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p>					

NO.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4	-	-	-	주의(2명)

【제 목】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1. 근 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고, 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12.4.~2014.현재까지 '학술정보관 북카페' 등 총 26건의 학교시설에 대한 유상사용을 허가하며 총 72,640,820원의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납부하게 하였으나, 국유재산 유상사용을 허가한 전체 26건의 사용료 납부기한을 사용·수익 시작 후 1일~29일 이후로 책정·고지함으로써,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음.

3.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은 학교시설의 유상사용을 허가할 때 그 사용료를 사용·수익이 시작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고지하기 바라며, 위 지적 내용과 같이 담당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NO.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4	-	환 수	963,340	-

【제 목】 국내 이전비 과다 지급에 관한 사항

1. 관련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 제20조(이전비의 지급)에 의하면 국내이전비는 이사화물이 5톤 이하인 경우 실비를 지급하고, 5톤을 초과하는 경우 7.5톤을 상한으로 하여 5톤에 해당하는 실비와 5톤에서 7.5톤에 해당하는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신규 부임한 ◇◇◇는 2012.11.29. 및 2013.2.12.에 서울에서 부여로 총 15톤의 화물을 이사하며 2,890천원의 비용을 지불한 후, 2013.3.27. 총무과로 이전비의 지급을 요청하였음.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는 2014.1.22. 기성회회계에서 ◇◇◇에게 이전비를 지급하며, 최대 7.5톤에 대해 지급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총 10톤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하여 총 963,340원을 과지급하였음.

3.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은 과지급된 이전비 963,340원을 반납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O.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4	통 보	-	-	-

【제 목】 보건실 물품 및 의약품에 관한 사항

1. 관련 근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성회회계 집행지침」Ⅲ-10(구입물품의 기부 및 관리)에 의하면 기성회예산으로 구입(제조 포함) 조성된 물품과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별도의 조치 없이 학교에 기부한 것으로 하며,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 및 처분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물품관리법」 25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2012.6. 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의약품을 일반회계 및 기성회 회계로 구입·운영하고 있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12~2013년 보건실의 약품진열장 등 4종(총 구입대금 1,116천원)의 물품을 기성회회계로 구입하였으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성회 회계 집행지침」에 따라 학교에 기부처리한 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학교에 기부처리하지 않았고 물품목록을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보관하여 물품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움

또한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의약품을 구입하였으면, 의약품수불대장 등을 기록하여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2012.6.~현재까지 5,399천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사용하며 이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지 않아, 2014.12.8. 현재 의약품의 재고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등 의약품 관리에 미흡한 실정임

3.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은 기성회회계로 구입한 보건실 물품을 학교에 기부 처리한 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구입된 의약품의 수불대장 등을 기록하는 등 향후 보건실 물품 및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NO.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4	통 보	-	-	-

【제 목】 현장실습비 지출증빙에 관한 사항**1. 관련 근거**

「계산증명규칙」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에 의하면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채권자의 영수증서, 이 경우에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등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제정·운영하며 기성회회계에서 현장실습비로 지원하고 있고, 현재 해당 학과에서 현장실습 전에 현장실습비를 지급받아 사용한 후 현장실습결과보고서와 함께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성회계 지출관은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이 아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지출의 증거서류로 보관하여야 함에도, □□□□학과 현장실습(2014.10.30.~2014.11.1)의 사례와 같이 해당 학과에서 현장실습 시 지출한 식사비 및 숙박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지출증거서류로 인정·보관하고 있음.

3.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은 기성회회계 집행시 관련 증빙서류는 간이영수증이 아닌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기성회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NO.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천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4	개 선	-	-	-

【제 목】 전통문화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1. 현 황

전통문화연구소는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위해 2003년 설립되었으나, 2009년 설립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부분의 기능이 이전되어 현재 한국전통문화연구 학술집 발간(년 2회) 및 학술심포지엄(년 1회) 개최 등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소장 1명과 행정보조원 1명으로 구성되어있음.

2. 지적 내용

가. 전통문화연구소 기능 재검토

전통문화연구소는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각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산학협력단과의 기능 중복으로 현재 연구분과를 조직·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술집 발간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의 연구지원 역할만을 담당할 뿐 연구기능을 상실하여 당초 설립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전통문화연구소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나. 연구용역비 관리 규정 개정

국고금 관리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문화연구소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연구용역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용역비 중 일정비율의 간접연구경비를 공제하여 2014.12.12일 현재 잔고 9,228,212원이 별도 계좌에 보관·운영하고 있어, 간접연구경비 공제에 대한 규정 개정 및 보관 중인 간접연구경비의 처리 방안 검토가 필요함.

3.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은 간접연구경비의 공제 및 별도 보관이 포함된 「전통문화연구소 연구용역비 관리 규정」의 개정 및 현재 보관중인 간접연구경비의 처리 방안을 강구하시며,

당초 설립한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전통문화연구소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 및 향후 운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NO.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천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4	모 범	-	-	-

【제 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기숙사 노후 난방설비 교체사업」

1. 주요실적 및 활동내용

- 사업목적 : 유류보일러를 에너지 절감형인 '공기열 히트펌프'로 교체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학생생활관 입주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기간 : '13.1.14 ~ '14.4.1까지
- 사업대상 : 학생생활관(8,836.74m²)
- 사업예산 : 금 707,594천원

(단위:원)

건 명	금 액	비 고
학생기숙사 노후 난방설비 교체공사 설계용역	12,603,520	2013
학생생활관 노후 난방시설 교체사업 전기공사 관급자재(수배전반) 구매	152,000,000	201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생활관 노후 난방시설 교체사업 전기공사	134,599,300	201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생활관 노후 난방시설 교체공사	203,729,000	2013
학생생활관 공기열히트펌프 구매설치공사(추가공사)	3,620,000	201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생활관 공기열히트펌프 구매	174,002,400	2013
학생생활관 공기열히트펌프 구매설치(추가구매)	27,040,000	2014
학생식당 샤워실(지하1층) 철거공사	9,495,000	2013
학생식당 변전실 리모델링 소방 설비공사	8,680,000	2013
학생식당 샤워실→변전실 리모델링 공사	19,700,000	2013
합 계	707,594,220	

○ 공종별 공사내용

- 건축공사 : 고압선 인입을 위한 변전실 설치(학생식당 지하 목욕탕 철거 후 설치)
- 난방공사 : 학생생활관 옥상 내 난방 및 온수공급용 히트펌프(24대) 설치
- 전기공사 : 난방 및 온수설비 전원공급을 위한 수배전반 및 고압설비 설치

2. 기대효과 및 성과

○ 개선내용

- (당초) 중앙난방에 따른 선택가동이 되지 않고 난방열원 공급지가 원거리인 학생회관(A동)에서 공급됨에 따라 많은 열 손실 및 에너지 낭비
- (개선) 에너지 요금이 저렴한 심야 및 기타시간대 난방열원 등을 축열하였다가 필요시간대 난방공급 등이 가능하도록 '공기열 히트펌프' 및 '전기축열조 탱크' 등을 설치, 동별 및 층별 온도제어가 가능하도록 '선택밸브 설치'

○ 예산절감 : 154,464천원(연간)

(단위:천원)

구 분	소요예산		절감예산	비고
	전체	학생생활관		
개선 전	418,464(유류)	264,464(유류)	-	
개선 후	264,000 (유류 154,000 / 전기 110,000)	110,000(전기)	154,464/년간	

4. 조치할 사항

- '14년 자체감사 우수사례 심사 대상에 포함